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검토보고서

2025. 8. 28.(목)

순서	검토안건	제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오 의원 외 4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강동오 의원 외 4명
- 제안일 : 2025. 8. 14.
- 회부일 : 2025. 8. 18. (의안번호 : 25-84)

2. 제안이유

-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 사항 (안 제3조)
-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안 제4조)
- 우수 봉사 회원 포상 사항 (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지방재정법」
- 입법예고: 2025. 7. 11. ~ 7. 18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① 조례의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강동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가 인도적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② 주요 제정내용

- 제1조 (목적)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제2조 (정의)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회를 의미.
 - 봉사회 회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소속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
- 제3조 (활동 지원)
 -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제4조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 지원 가능: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집행·정산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름.

○ 제5조 (표창)

-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가능.

3] 제정내용 검토

○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자체는 공익 목적의 구호·복지·보건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법적 근거는 명확함.
- 다만, 보조금 지원 시 반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기존 마포구 조례에서 누락된 지원 근거를 보완한 것으로 타당성이 높음.

○ 문제점 및 우려사항

- 제3조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산 남용 우려 존재.
- 보조금 한도 및 심사 절차 명시 부족.
- 사업 성과 평가 및 사용내역 관리체계 미비.

④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와 마포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마포구협의회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적십자 사랑나눔 프로젝트		
세부사업명	한가위 송편나눔, 가온 김장나눔		
사업내용	관내 취약계층 생활 및 정서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		
연도별 보조금 지원액	2023년	2024년	2025년
	10,120,000	10,120,000	10,120,000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수 자치구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운영 중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며, 적십자사 활동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사회 봉사 기반 확립을 위한 필수적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적십자사봉사회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 마포구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원금 한도, 심의 절차, 성과평가 체계가 다소 미비하므로, 시행규칙 또는 부칙을 통해 세부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 및 정산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용내역과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차년도 예산 감액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